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6. 13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6.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98. 6.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97. 8. 30) 및 동법시행령(98. 2. 24)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할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6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함(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 총무국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계장
- 시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안 제4조제4항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는 광의적 해석입니까?	○ 네,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삼입한 조항입니다.
○ 재난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는 데요?	○ 예,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민간인의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386호
의결년월일	98. 6. 20 (제61회)

제안년월일 : 1998. 6. 20

제안자 : 총무위원장

☐ 수정이유

- 안 제4조제4호 기금의 용도 중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등의 사항은 기금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안 제6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및 재난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함.

☐ 주요골자

- 안 제4조제4호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를 삭제
- 안 제6조제3호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함.
- 안 제6조제4호 위원회 위원을 당초 안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였으나 시의원과 재난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안으로 함.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수정안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소속공무원, 시의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재난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1~3(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1~3(제정안과 같음)
4.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 에 관한 홍보	(삭제)
5~8 (생략)	4~7 (제정안 제5호 내지 제8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u>총무 국장이 된다.</u>	③-----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④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 속 실·국·소장 또는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u>임명한다.</u>	④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 속 공무원, 시의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재난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u>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수정안포함]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천시
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중 시
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
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
급조치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일부에 대한 용자. 단, 부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가.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
우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의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④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재난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